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2. 29.(금) 09:00 (2023. 12. 29.(금) 석간)

고용노동부,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94개 사업장 명단공표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**사망재해 발생** 등 **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**를 **위반**한 **사업장 494개소**의 **명단**을 **공표**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**고용노동부 장관**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사업장**의 **산업재해 발생건수** 등을 **공표**해야 한다.

구체적인 **공표 대상**은 ▲**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**, ▲**사망만인율**(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)이 **동규모·동업종 평균 이상**인 **사업장**, ▲위험물질 누출, 화재 및 폭발 등 **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**, ▲**산재**를 **은폐**하거나 **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**한 **사업장** 등으로서 **산업안전보건법 위반**이 **확정**된 사업장이다.

* '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'23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

공표 대상이 된 **사업장**과 **임원**에 대해서는 향후 **3년간 각종 정부포상**이 **제한**된다.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**최고경영자**(CEO)의 **안전의식 제고**를 위한 **교육**도 **실시**할 예정이다.

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❶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⇨ 11개소

11개 공표 사업장 중 **사망재해**가 **많은 사업장**은 ㈜**대평**(5명 사망, '21년), ㈜**포스코건설**(원청)-**한라토건**㈜(하청)(4명 사망, '16년) 등이다.

❷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⇨ 367개소

367개 공표 사업장 중 **업종별***로는 **건설업**이 **절반 이상**(193개소, 52.6%), **규모별****로는 **50인 미만 사업장**이 **대부분**(301개소, 82.0%)을 차지했다.

* **[건설업]** 193개소(52.6%), **[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제조업]** 55개소(15%), **[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]** 17개소(4.6%) 순서

** **[50인 미만]** 301개소(82%), **[50~99인]** 27개소(7.4%), **[100~299인]** 19개소(5.2%) 순서

❸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⇨ 9개소

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**사고피해**가 **큰 사업장**은 **한화에어로스페이스(주)**(3명 사망·2명 부상, '19년), **㈜LG화학 대산공장**(1명 사망·2명 부상, '20년), **AGC화인테크노한국(주)**(9명 부상, '21년) 등이다.

❹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⇨ 산재은폐 0개소, 산재미보고 21개소

올해 **산재 은폐**로 **공표**되는 **사업장**은 없으며, **최근 3년**간 **2회 이상 산재 미보고**로 **과태료 처분**을 받은 **사업장**은 **㈜미래이엔씨**(미보고 6건), **디엘건설(주)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**(미보고 5건) 등 **21개소**이다.

또한, **사망재해** 및 **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** 중 **수급인 근로자**에 대한 **안전보건조치 의무**(산안법 제63조) **위반**으로 **처벌**받은 **원청 134개소 명단**도 **함께 공표**했다.

❺ 원·하청 통합공표 사업장 ⇨ 3개소

원청의 **하청**에 대한 **산재예방 책임 강화**를 위해 시행 중인 '**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***'에 따라, **하청 사고사망 비중**이 **높은 원청 3개소**의 명단도 공표했다.

* **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, 전기업** 중 **500인 이상 사업장**에 대하여, '**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**'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을 공표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"이번 **명단공표**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**산업재해**에 대한 **경각심**이 높아지기를 바라며,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**안전보건관리체계**를 더욱 **견고히** 하여 **유사한 사고**가 **재발**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."라고 하면서,

"**정부**도 **사망재해 발생 사업장**에 대해 앞으로도 **엄중하게 책임**을 **묻는** 한편, **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**과 **안전문화 확산** 등을 통해 **사망사고**가 **감축**될 수 있도록 **전력**을 다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공표 명단은 **관보**, **고용노동부 홈페이지***(www.moel.go.kr)에서 **확인**할 수 있다.

*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
[붙임1]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
[붙임2]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희준 (044-202-8804)
		담당자	사무관 전문위원	차민경 (044-202-8812) 이현숙 (044-202-881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

□ **(목적)** 산업재해 **예방 조치 의무 위반** 및 불이행에 따라 **사망사고** 등이 **발생**한 **사업장 명단**을 **공표** → **경각심 제고** 등 **사업주 의무이행** 유도

* **(산안법 제10조제1항)**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**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**(이하 "산업재해 발생건수 등" 이라 한다)**을 공표**하여야 한다.

□ **(대상)**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**형**(刑)이 **확정**된 **사업장**

* '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판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'23년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

[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(산안법 시행령 제10, 12조)]

(10조1항)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**사업장**

1호. **(사망자 2명 이상)** 산업재해로 인한 **사망자**(이하 "사망재해자"로 한다)가 **연간 2명 이상 발생**한 사업장

2호. **(사망만인율)** **사망만인율**(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)이 **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**인 사업장

3호. **(중대산업사고)**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**중대산업사고가 발생**한 사업장

4호. **(산재은폐)**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**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**한 사업장

5호. **(산재미보고)**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**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**를 **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** 하지 않은 사업장

※ 舊 법령의 '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' 기준은 '20년 이전 발생 재해까지만 적용

(10조2항) **(원청도 함께 공표)** 법 제63조에 따른 **도급인**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**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**를 **위반**하여 **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**로서 **수급인의 사업장**이 **공표사업장에 해당**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**도급인 사업장**도 **함께 공표**

(12조) **(원·하청 통합공표)** 도급인이 사용하는 **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**인 **제조업**, **철도운송업**, **도시철도운송업**, **전기업** 중 **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**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**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**을 **공표**

□ **(공표에 따른 효과)** 3년간('26년까지) **정부포상**에서 **제외**

○ **공표 사업장**에 대해 **CEO 안전교육** 실시

붙임2 **세부 기준별 세부 현황**

❶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(제1항 제1호)

❖ **(대상)** 산업재해로 **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** 발생한 사업장

○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1개소

- 건설업(3개소, 27%),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2개소, 18%), 농업(2개소, 18%) 순서

연번	발생 연도	사업장명 (현장명)	업종	규모	사망자수(명)
1	2022년	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차오름	농업	50인 미만	2
2	2022년	장재농장	농업	50인 미만	2
3	2021년	(주)대평	식료품제조업	50인~99인	5
4	2021년	세방(주)동해지점	철도·항공·창고·운수관련서비스업	50인~99인	2
5	2021년	휴먼이엔티(주)	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	50인 미만	2
6	2020년	태림종합주택관리㈜ 신동아하이팰리스	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	50인 미만	3
7	2020년	(주)삼표시멘트 삼척공장(원청) 삼척이앤씨㈜(하청)	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	100~299인	2
8	2019년	(주)성현이앤씨(원청) (주)청우건영(하청) ((주)클리오사옥신축방수공사)	건설업	50인 미만	2
9	2019년	지에스건설㈜(원청) 범한종합건설(주)(원청) 상명건설㈜(하청) (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BTO건설공사)	건설업	100~299인	3
10	2019년	한화에어로스페이스㈜ (舊, (주)한화) 대전사업장	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	500~999인	3
11*	2016년	㈜포스코건설(원청) 한라토건(주) (구, 매일이엔씨(주))(하청) (진집선(당고개-진접)복선전철제4공구건설공사)	건설업	100~299인	4

* 11번은 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(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고, 사망만인율이 동규모 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)에 따라 공표

❷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(제1항 제2호)

❖ **(대상)**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**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**

○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367개소

- **(업종별)** 절반 이상(193개소, 52.6%)이 건설업이며, 이 외에는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15.0%),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(4.6%), 화학·고무제품제조업(4.1%) 순서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비금속제조업	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	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	도소매·음식·숙박업	식료품제조업	기 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367 (100.0)	193 (52.6)	55 (15.0)	17 (4.6)	15 (4.1)	12 (3.3)	11 (3.0)	64 (17.4)

- **(규모별)** 50인 미만 사업장(301개소, 82.0%)이 대부분이며, 50~99인(7.4%), 100~299인(5.2%) 순서

구 분	계	50인 미만	50~99인	100~299인	300~499인	500~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367 (100.0)	301 (82.0)	27 (7.4)	19 (5.2)	7 (1.9)	8 (2.2)	5 (1.4)

❸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(제1항 제3호)

❖ **(대상)**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**중대산업사고***가 발생한 사업장

* 유해·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,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

○ **공표대상 사업장**은 **총 9개소**이며, **화재** 및 **폭발 사고**가 **대부분** (7개소, 77.8%)

연번	사업장명	재해 발생일	사고유형	피해정도(명)	
				사망	부상
1	(주)아이티켐	'22.1.4.	폭발	0	1
2	에스티팜㈜ 반월공장	'22.8.3.	화재	0	1
3	코맥스화학㈜	'22.10.20.	누출	0	1
4	AGC화인테크노한국㈜	'21.1.29.	폭발	0	9
5	한솔케미칼(주)	'21.6.2.	화재	0	2
6	(주)아이티켐	'21.8.9.	누출	0	4
7	㈜진광화학 와촌공장	'21.12.9.	폭발	0	1
8	㈜LG화학 대산공장	'20.5.19.	폭발	1	2
9	한화에어로스페이스㈜ (구, (주)한화) 대전사업장	'19.2.14.	폭발	3	2

❹ 산재은폐 사업장(제1항 제4호)

❖ **(대상)**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**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**

○ **산재은폐**로 인한 **공표 대상 사업장**은 총 **0개소**

❺ 산재미보고 사업장(제1항 제5호)

❖ **(대상)**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**산업재해의 발생 보고**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**미보고한 사업장**

○ 산재미보고로 인한 **공표 대상 사업장**은 **㈜미래이엔씨**(미보고 6건), **디엘건설(주)로지스코아북천안물류센터신축공사**(미보고 5건) 등 21개소

- **(규모별)**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차지(10개소, 47.6%)

구 분	계	50인미만	50 ~ 99인	100 ~ 299인	300 ~ 499인	500 ~ 999인	1,000인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21 (100.0)	10 (47.6)	3 (14.3)	6 (28.6)	1 (4.6)	0 (0.0)	1 (4.8)

❻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(구 제1항 제1호)

❖ **(대상)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**으로서 **연간 재해율**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

*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

○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**공표대상 사업장**은 **총 83개소**

- **(업종별)** 절반 이상(51개소, 61.4%)이 **건설업**이며, 이 외에는 **기계기구·금속제조업**(13.3%), **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**(4.8%) 순서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	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	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	도소매음식숙박업	기 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83 (100.0)	51 (61.4)	11 (13.3)	4 (4.8)	3 (3.6)	3 (3.6)	2 (2.4)	9 (10.8)

- **(규모별)** '50인 미만' 사업장(62개소, 73.8%)이 **대부분**이며, **'50~99인'**(10.7%), **'100~299인'**(9.6%) 순서

구 분	계	50인 미만	50 ~ 99인	100 ~ 299인	300 ~ 499인	500 ~ 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83 (100.0)	62 (74.7)	9 (10.8)	8 (9.6)	0 (0.0)	3 (3.6)	1 (1.2)

❼ 원청도 함께 공표(2항)

❖ **(대상)** 도급인 사업주가 제63조(도급시 안전·보건조치)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**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**

○ 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원청도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134개소

- **(공표기준별)** 대부분 중대재해 발생(구법 1호), 사망만인율(2호)에 따른 공표 사업장 원청이 해당

구 분	계	사망2명 이상	사망 만인율	중대산업 사고	(舊법) 중대재해+재해율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134 (100.0)	4 (3.0)	98 (73.1)	0 (0.0)	32 (23.9)

❽ 원 · 하청 통합공표

❖ **(대상)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, 전기업** 중 **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** 사업장에 대하여, '**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**'이 **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**보다 **높은 사업장**을 공표

○ 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공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(주) 울산공장, ㈜삼표시멘트 삼척공장 등 3개소

연번	재해 발생 연도	업종명	사업장명	사고사망만인율(‰)			사고사망자수(명)		
			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
1	2021	자동차제조 및 수리업	현대자동차(주) 울산공장	0.22	0.00	0.72	1	0	1
2	2020	시멘트 제조업	㈜삼표시멘트 삼척공장	20.51	0.00	42.11	2	0	2
3	2020	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	고려아연(주) 온산제련소	3.44	0.00	6.21	1	0	1